

2023년 1월 중 119소방안전패트를 단속대상

구리소방서에서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를 단속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월 18일

구 리 소 방 서 장

1. 단 속 개 요

- 기 간: 2023. 1. 18. ~ 1. 31. ※ 연중 반복·수시 단속
- 인 원: 화재안전조사요원
- 대 상: 효사랑 요양원 등 4개 소
- 내 용
 - 3대 불법행위 차단(소방시설 차단, 피난·방화시설, 불법주차*)
※ 불법주차 :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한함
 - 공사장, 창고시설 등 무허가 위험물 저장·취급 위법행위 등 단속
 - 숙박시설, 민박·펜션 등 휴가철 다수 이용객 시설 사전 불시 단속
 - 대규모 복합건축물 및 판매시설,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

2.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

- 조사근거
 - 「화재예방법」 제7조(화재안전조사) 내지 8조, 「소방시설법」 12조(소방시설 관리 등), 16조(피난시설 등 유지관리)
☞ 「화재예방법」 시행령 제7조(화재안전조사의 항목) 단서(소방시설, 피난시설·방화시설 등)
 -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
☞ 「동법시행령」 제12조(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), 「동법시행규칙」 제32조 및 33조(주차금지의 장소)
- 조사범위 : 비상구 폐쇄, 소방시설 차단, 불법주차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비상구 폐쇄 : 「소방시설법」 제61조 제1항에 제3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- 소방시설 차단 : 「소방시설법」 제56조에 따른 5년(7년,10년)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(7천만원, 1억원) 이하 벌금 부과 / 「소방시설법」 제61조 제1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- 불법주차 :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위반내용 채증 후 시·군 통보 ⇒ 시·군에서 과태료 부과
 - 불법주차 : 「도로교통법」 제156조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